

질문 1: 선거

본 제안은 시의 공직 선거와 관련된 뉴욕시 현장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게 됩니다.

순위선택투표제. 현재 대부분의 시 공직 선거는 전통적인 다수 득표 또는 "최다 득표자 당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과반수 미만의 표를 얻은 경우를 포함하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이기게 됩니다. 시 전역의 세 공직(시장,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에 대한 예비 선거에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보궐 선거에서, 최소 4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나중에 득표수 상위 2명의 후보자 간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시장,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 즉시 결선 투표로도 알려진 순위선택투표제(Ranked Choice Voting)를 시행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후보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 최대 5명의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순위 득표 수에서 최하위 후보는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2순위로 선택한 후보자에게 이전됩니다. 두 후보만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서 이러한 공직에 대한 순위선택투표제를 실시하면 향후 별도의 결선 투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위선택투표제는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선에는 변함없이 전통적인 "최다 득표자 당선"의 다수 득표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순위선택투표를 숙지하도록 시는 유권자 교육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장, 공익 옹호자, 감사원장, 자치구 장 및 시의원에 대한 모든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 적용됩니다.

보궐 선거 시기. 현재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또는 시의원의 임기 중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과도기 공석을 채우기 위한 초당적인 보궐 선거가 일반적으로 약 45일 후에 치러집니다. 시장이 공석이 된 경우, 보궐 선거는 일반적으로 약 60일 후에 치러집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군인과 해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이러한 공직에 대한 보궐 선거 실시 기간을 80일로 연장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됩니다.

선거구 조정 시기. 시의회 선거구 경계는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재조정됩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선거구 조정(Redistricting)"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시의회에서 임명한 선거구획정위원회(Districting Commission)가 선거구 조정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공청회 개최와 새로운 시의회 선거구 지도 작성도 포함됩니다. 현행 현장에 따라, 다음 선거구 조정은 2022년 중반에 시작하여 2023년 3월에 종료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욕주는 시의 예비 선거를 9월에서 6월로 변경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시의회 후보자는 예비 선거 투표지에 기재되기 위한 후보 추천 청원의 서명 수집을 시작합니다. 즉, 시의회 후보자는 선거구 거주자들로부터 서명을 획득해야 하지만, 선거구의 경계를 알지는 못합니다. 수정안은 선거구 조정 절차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시의회 후보자의 청원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를 확정합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은 즉시 발표되어 다음 선거구 조정 절차에 적용됩니다.

질문 2: 민원심사위원회

본 제안은 민원심사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CCRB)와 관련된 뉴욕시 현장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게 됩니다.

CCRB는 과도한 무력 사용, 공권력 남용, 무례 또는 거친 말투와 관련되어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대중의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CRB는 경찰국에 직접 징계를 권고합니다. 좀 더 심각한 사례의 경우, 경찰국과의 협약에 따라 경찰국 간부가 주재하는 행정심판에서 CCRB가 직접 해당 경찰관을 기소합니다. 모든 경우에 최종 징계 권한은 경찰국장에게 있습니다.

민원심사위원회의 구조. 현재 CCRB는 시장이 임명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의회가 5명의 위원을, 경찰국장이 3명을 추천하며, 시장이 단독으로 나머지 5명을 선택합니다. 또한 시장이 위원장을 맡을 1명을 선택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CCRB의 인원을 확장하여 공익 옹호관이 지명하는 1명,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간사가 공동으로 지명하는 1명(위원장을 맡음)을 추가합니다. 위원장이 공석일 때마다 시장은 기존 위원들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지명합니다. 또한 수정안은 시의회가 위원을 단지 추천하는 것이 아닌 직접 지명하도록 하며 공석은 60일 내에 채워져야 합니다.

2명의 신규 위원의 임기가 2020년 7월 6일에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안된 수정안은 2020년 3월 31일부로 발효합니다.

CCRB 예산 보호. 매년 시장과 시의회가 CCRB의 예산을 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부터,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서면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CRB의 연간 인건비는 예산 편성된 경찰국의 정복 경찰관 수의 0.65%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지원할 정도가 필요합니다.

징계 권고사항의 불이행. 현재, CCRB가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경찰국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해 CCRB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내려진 처벌을 포함하거나 그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국 간부가 주재한 행정 심판에서 CCRB가 직접 기소한 좀 더 심각한 사례의 경우, CCRB나 주재하는 간부가 권고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기 전에, 경찰국장은 CCRB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국장은 이러한 통보에 권고된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일반적으로 "변경 각서"로 칭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CCRB가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하면, 경찰국장은 CCRB에 보내는 보고서에 내려진 징계나 처벌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국장이 CCRB의 권고사항(또는 행정 심판 후에 경찰국 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찰국장은 이러한 불이행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려진 징계가 권고사항보다 가벼운 경우, 어떻게 경찰국장이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고려된 각 요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징계가 내려진 후 45일 이내에 이러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경찰국장과 민원심사위원회가 더 짧은 일정에 합의한 경우는 제외).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됩니다.

CCRB 사안에서 허위 공식 진술. 현재, CCRB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CCRB는 추후 조사와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경찰국에 회부하며 자체적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CCRB의 민원 처리 조사 과정 중에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CCRB 민원의 대상인 경찰관의 공식 진술의 진실성에 관해 CCRB는 조사하고,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2020년 3월 3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소환권 위축. 현재, 현장은 CCRB에 조사를 위해 증인의 증언이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CCRB의 이사회가 다수결로 승인한 경우에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CCRB는 집행 이사에게 소환장 발부와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소환장 집행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CCRB는 자체 이사회가 다수결로 이 권한을 인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2020년 3월 3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질문 3: 윤리와 관리

본 제안은 뉴욕시 현장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출현 금지. 일반적으로 전직 시 직원과 선출직 공무원은 그들이 근무했던 당국, 또는 정부 부처와 교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지는 퇴직 후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부시장, 기관 수장, 이사회와 위원회의 유급 위원, 그리고 이사회나 위원회의 집행 이사나 고위직 관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수정안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하게 되며, 해당 발효일 이후에 퇴직하는 시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이해충돌위원회 구조. 이해충돌위원회(Conflicts of Interest Board, COIB)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외부 고용, 봉사활동, 선물, 정치 활동, 직위 남용 및 퇴직 후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과 윤리법의 집행 및 해석을 담당합니다.

현재 COIB는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로 시장이 임명하는 6년 임기의 이사회 위원 다섯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2022년 3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위원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1명과 공익 옹호관이 임명하는 1명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이 수정안에 따라 2명이 아닌 3명(다수결)에 의해 이사회 결정이 승인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됩니다.

COIB 위원의 정치적 활동. 현장은 COIB 위원의 기준을 정합니다. 위원은 독립성, 진실성, 시민적 헌신 및 높은 윤리 기준을 보여야 합니다. 위원은 공직을 맡거나 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시에 로비스트로 출두할 수 없습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추가로 COIB 위원의 시 선출직 후보 캠페인 참여를 금지하고, 위원이 각 선거 주기에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시장 후보 \$400, 공익 옹호관 후보 \$400, 감사원장 후보 \$400, 자치구 장 후보 \$320, 시의회 후보 각 \$250로 줄입니다.

이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되며 COIB에 임명된 모든 위원과 그 이후 임기가 연장된 위원에게 적용됩니다.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WBE) 시전역 책임자 및 공직. 뉴욕시 현장과 행정법(Administrative Code)에 따라, 시의 소수인종 및 여성 소유 기업(Minority- and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 M/WBE) 프로그램은 소수인종과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시정부의 위탁 기회 증진을 담당합니다. 현재 시 행정에 따라, 시전역 M/WBE 책임자가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장 집무실에 위치한 M/WBE 사무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이 프로그램의 지속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시 행정에서, 시전역 M/WBE 책임자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장 집무실에 위치한 M/WBE 사무소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2020년 3월 3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공사 고문 임명. 시의 공사 고문(Corporation Counsel)은 시의 변호사이며 시의 법무부를 관장합니다. 법무부는 모든 민사소송, 청소년 범죄 소송 및 법원의 집행 소송에서 시의 모든 기관을 포함해 시를 대표합니다. 다른 책무 중에서도, 법무부 변호사는 뉴욕시와 뉴욕주 법률, 부동산 임대 및 시 계약을 입안하고 검토합니다. 법무부서는 다양한 사안에서 시 공무원에게 법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시장이 공사 고문을 임명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로 시장이 공사 고문을 임명합니다. 시장은 공석 또는 시의회의 추천 비승인으로부터 60일 내에 지명해야 하며, 120일 내에 공석을 채우도록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되며, 수정안의 승인 이후에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공사 고문직의 공석에 적용됩니다.

질문 4: 시 예산

본 제안은 시의 예산 및 예산 수립 과정과 관련된 뉴욕시 현장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게 됩니다.

뉴욕시 현장은 시장과 시의회가 매년 시의 예산을 정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1월에 예산안을, 4월에 실행 예산을 제시합니다. 시의회는 시장과 협의 후 통상적으로 6월에 예산을 채택하며 그 예산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수익안정기금("경기불황대비기금"으로도 칭함). "경기불황대비기금"은 경기 침체, 비상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향후 예산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한 해의 초과수익분에 해당하는 기금입니다. "경기불황대비기금"은 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세금 인상과 서비스 감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현재 "뉴욕시"를 위한 "경기불황대비기금"을 만드는 데에는 법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법적 장애물은 한 해에 절감된 수입을 받아서 향후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뉴욕시 현장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현장의 균형 예산 요구사항의 예외를 제공하여, 수립된 "경기불황대비기금"의 자금을 특정 연도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시에서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뉴욕시 현장과 유사한 요건을 담고 있는 뉴욕주 법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현재 주법의 해당 요건은 2033년에 만료하게 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이 제정되고 필요한 주법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시는 "경기불황대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기금의 사용을 규정하는 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을 위한 예산 보호. 매년 시장과 시의회가 선출된 공익 옹호관과 다섯 명의 자치구 장에 대한 예산을 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부터,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공익 옹호관과 자치구 장에 대한 최소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장이 재정적으로 예산 금액을 더 낮춰야 한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예산은 각 공직의 2020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 시의 총지출예산(연금 기여분 등의 특정 요인 제외)의 변동률 또는 뉴욕시 대도시권의 물가 상승률 중 더 작은 비율에 따라 향후 회계연도에 조정됩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되어, 필요한 최소 예산이 2021 회계연도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세수 추정. 뉴욕시 현장은 시장이 다음 회계연도의 비재산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6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산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현장에 따라 이후 특정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이 채택되는 시점 가까이에 시장이 일반적으로 추정치를 제출하며, 그 시점은 종종 6월 5일 이후입니다. 현장에 따라 시의회가 예산 채택 후 즉시 균형 예산에 충분하도록(실제로는 비재산 세수 추정치와 예산

편성된 비용 지출 간 차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재산세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재산 세수 추정치는 중요합니다.

즉시 발효되는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실행 예산을 제출하는 4월에비재산 세수 추정치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은 5월 25일까지 이 추정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는 재정 필요성을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추정치를 추가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되어, 이러한 절차가 2021 회계연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 수정 시기. 시의 예산이 채택된 후, 회계연도 중에 예산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시장이 지출이나 수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또는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업데이트 하려는 경우, 제안된 예산 변경의 내용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거나, 또는 제안된 변경을 반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시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예산 수정"이라고 합니다.

시 예산 준비 이외에, 시장은 현 회계연도 지출과 수입 영수증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종종 신규 프로그램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재정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뉴욕시 현장은 회계연도에 적어도 분기별 재정계획서 업데이트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시장이 예산 수정이 요구되는 수입이나 지출의 변경을 담은 재정계획서 업데이트를 제출할 때, 재정계획서 업데이트 후 30일 내에 필요한 예산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5: 토지 이용

본 제안은 현장의 표준토지이용검토절차(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 ULURP) 조항 2개를 수정하게 됩니다.

뉴욕시 현장은 ULURP를 제정합니다. 이것은 공청회 시기와 순서 그리고 지역사회 위원회, 자치구 장,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 DCP) 및 시의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의 토지 이용 신청 승인을 명시합니다. ULURP는 구역에서 다른 밀도와 용도를 허용하는 토지용도 지구 지정, 쓰레기 처리장 건립을 위한 토지 구입 등 시의 부동산 구매와 판매 또는 임대, 시의 토지용도 결의안을 준수하는 프로젝트를 허용하기 위한 특별 허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행위에 적용됩니다.

ULURP 사전 인증 통지 기간. 신청자(민간 개발업자 혹은 시 기관 등)가 DCP에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DCP가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할 때 ULURP가 시작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신청서 완료와 ULURP 공청회 기간이 시작됨을 인증하기 전에, DCP는 상세한 프로젝트 개요를 해당 지역사회 위원회, 자치구 장 및 자치구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 인증 최소 30일 전에 필요한 프로젝트 개요가 해당 지역사회 위원회, 자치구 장 및 자치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후 5일 이내에 DCP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DCP의 인증을 받은 신청서는 DCP가 송부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한 프로젝트 개요와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2020년 8월 31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위원회의 추가 ULURP 검토 시간. ULURP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위원회가 DCP의 인증이 완료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60일 내에 대중에게 공지하고, 공청회를 열고, 서면 추천서를 DCP와 해당 자치구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은 지역사회 위원회에 매달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예외적으로 7월과 8월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사회 위원회는 여름에 필요한 ULURP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어, DCP와 자치구 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지역사회 위원회에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ULURP 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1일과 7월 15일 사이에 인증받은 신청서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제안된 수정안에 따르면 6월에 인증받은 ULURP 신청서의 경우에는 90일(이전 60일), 7월 1일과 15일 사이에 인증받은 신청서의 경우에는 75일(이전 6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현장 수정안은 즉시 발효하게 됩니다.